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박예희 노무사



목차

- 0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 0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특징
- 0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 04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보호방안
- 0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1) 줄지 않는 사고 사망률

- 2022년 재해 근로자 수 : 130,348명 / 산재 사망근로자 874명
- 매달 72.8명 사망, 매일 2.42명 사망
- 산재은폐 적발된 건수 : 국내 산재 3건 중 2건은 산재 은폐
- 우리나라 재해율: 0.65%, 30년 전 (2.66%)
-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사망률은 높은 편.
사망만인율 우리나라 0.43 (OECD 평균 0.29 / OECD 국가 중 최하위)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1) 줄지 않는 사고 사망률

산재사망처벌강화특별법
> 심의없이 폐기

2012

20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청원입법
(4.16연대) > 폐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노회찬 의원) > 폐기

2017

2020.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강은미의원)

2020

2020. 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 청원)

2020

2021.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안) 국회 통과

2021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1) 줄지 않는 사고 사망률



2021년 1월 9일

국회 통과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통과



2021년 1월 26일

공포



2022년 1월 27일

시행

22. 1. 27.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

24. 1. 27.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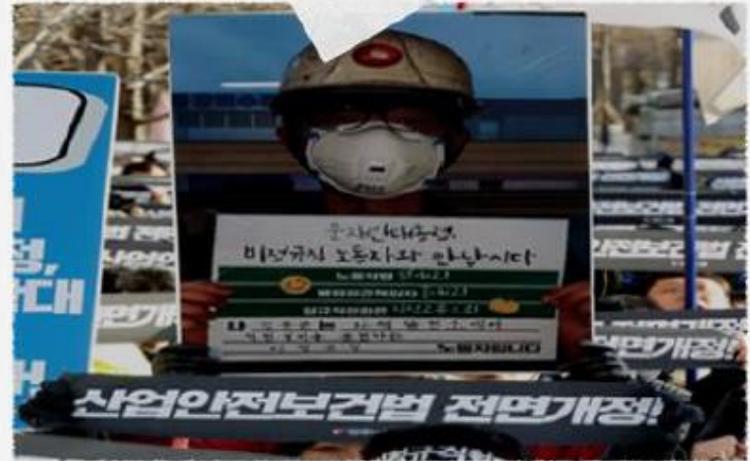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2)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각성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위험업무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각성



서부화력발전 김용균 사망사건

위험업무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각성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도급인 및 발주자 의무확대)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2)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각성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 38명 사망

혼재 작업으로인한 재해
발주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 6명 사망

건설현장 총체적관리부실 사고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2)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각성



세월호 침몰 사고 / 299명 사망

'시민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태원 압사 사고 / 158명 사망

'시민재해'에 대한 국가 및 행정기관의 책임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3) 중대재해 발생 책임주체에 대한 사회적 각성

이천 화재물류창고 화재 참사 처벌내용

38명 사망 '이천 화재참사' 물류창고 발주처 팀장 무죄 확정

시공사 현장소장 금고 2년, 시공사 벌금 3천만원

감리단장 금고 1년 6개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시공사 책임자 최소 징역 10년 이상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4) 평택, 당진항 컨테이너 부두 근로자 사망사고

판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2. 1. 13.
처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청 지사장 : 징역1년 (집행유예2년)원청 팀장, 대리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하청 직원, 지게차 운전기사 : 징역4개월 (집행유예2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Flat Rack 컨테이너 주변 정리작업.처음으로 하는 작업이었으나, 안전교육 및 작업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에 투입됨.사전 작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음.지게차가 한쪽 날개를 접으려고 하는 순간 안전핀과 판스프링의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반대편 날개(약 300kg가량)가 쓰러짐.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5) 동해항 부두 인부 매몰 사망사고

판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7. 20.
처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청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원청 공장장, 하청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사고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00톤급 시멘트 전용 화물선 선박 화물창 내벽에 붙은 석탄재(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 연소된 후 남은 재, 시멘트 생산 부원료)를 떨어뜨리는 작업.• 10명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고,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 사고발생 선박 하역작업 작업 중지명령 및 압수수색.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6)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 판결(1호 판결)

판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3. 4. 6.
처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청 사업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원청 현장소장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원청 안전관리자 : 벌금 500만원하청 현장소장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원청 : 벌금 3000만원하청 : 벌금 1000만원
사고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요양병원 건설공사 중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 작업.고정앵글(약 92.4KG 중량물)을 건물 1층에서 6층까지 내부 개구부를 통해 인양하는 업무를 담당.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없이 작업하다가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1.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배경

6)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처벌 판결(2호 판결)

판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3. 4. 26.
처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하청(강백산업) 사업주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u>원청(한국제강) 사업주 : 징역 1년</u>원청 (한국제강) : 벌금 1억원
사고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 방열판의 러그홀에 위와 같이 손상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 에 직접 연결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면서 중량물과 근접하여 크레인을 조종하게 함으로써, <u>때마침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같은 날 1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u>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특징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특징

1) 처벌대상 : "경영책임자 및 법인"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하청 사업주•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하청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 기타 안전보건관계자(건설공사 감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p>경영책임자 및 법인</p>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특징

1) 처벌대상 : “경영책임자 및 법인

- “경영책임자”란?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특징

2) 처벌 수위 : “높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범위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법인 : 10억 이하 벌금

손해배상 :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중대재해사실 공표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특징

3) 법규 준수 주체의 의무 이행 : “포괄적·추상적”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이행점검

+

평가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특징

3) 법규 준수 주체의 의무 이행 : “포괄적·추상적”

- 중대산업재해의 개념

개념	보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2)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형식에 관계없이 대가 목적으로 노무 제공자)3) 여러 단계 도급의 경우 수급인과 관계 있는 자

2.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특징

3) 법규 준수 주체의 의무 이행 : “포괄적·추상적”

- 중대시민재해의 개념

개념	보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시민

1. 원료 또는 제조물

2. 공중이용시설

3. 공중교통시설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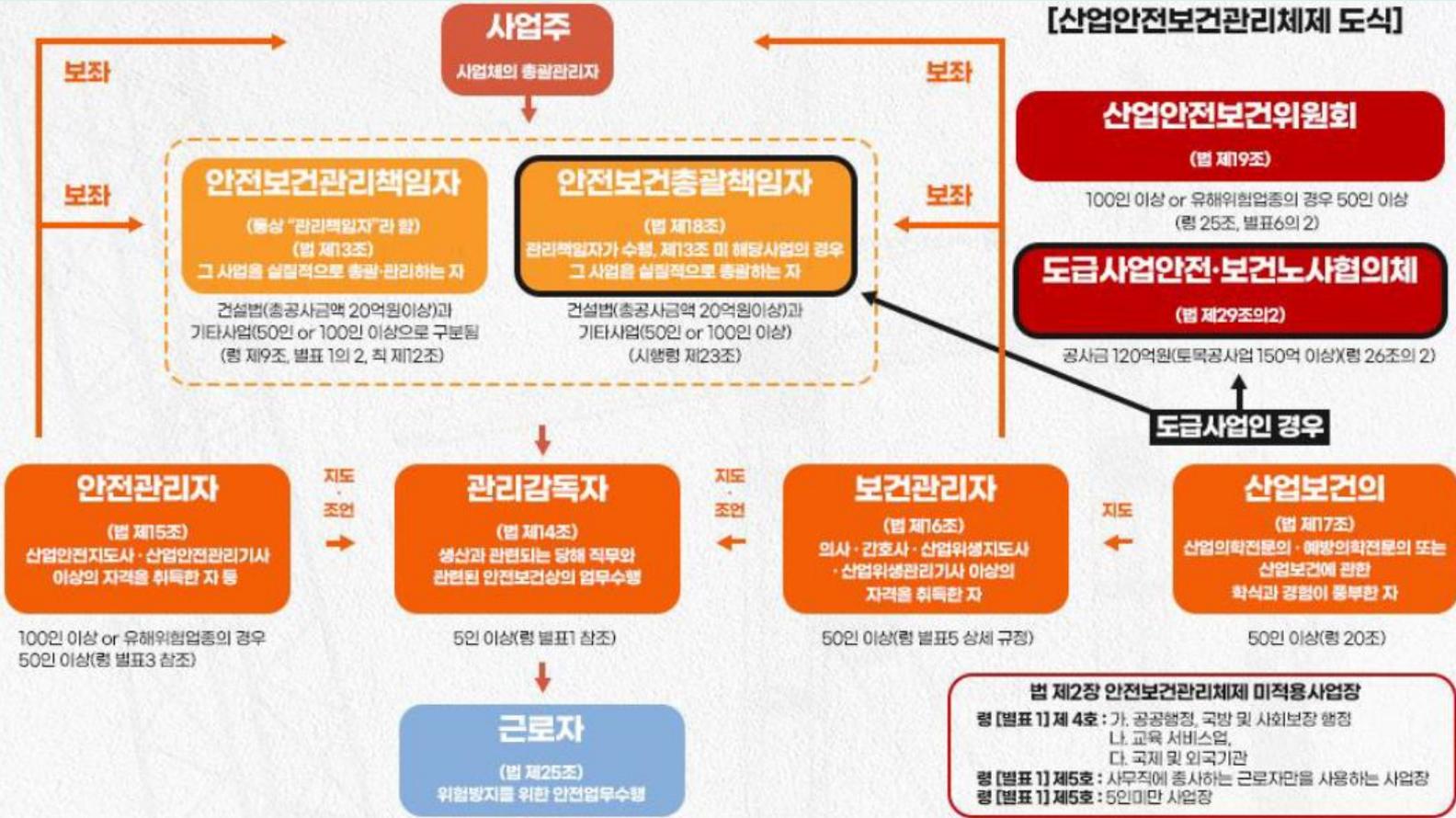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란?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란?

- 안전보건관리활동 : 계획(P) - 활동(D) - 점검 및 평가(C) - 조치(A)

구분	세부내용
P(PLAN -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안전보건 목표 및 계획 수립
D(DO - 실행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점검 활동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활동,재해조사 및 원인분석
C(CHECK - 점검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안전보건 계획 및 목표에 대한 분석 및 평가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업무평가
A(ACT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안전보건 활동 우수사례 포상차년도 안전보건 추진방향 선정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개념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개념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의 세부내용(중대재해처벌법)**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전담조직의 구성(500인 이상)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예시 : 위험성평가 절차) - 반기 1회 이상 점검 + 필요조치
 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린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계자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예: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재해 및 비상 시 조치에 대한 매뉴얼 마련 -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용역·위탁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예:적정업체 선정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대한 기준) - 반기 1회 이상 점검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개념

1.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1)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와 의지, 철학이 포함되어야 할 것
 - 2)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사내 게시 등)
 - 3) 사업장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를 고려해서 설정할 것
 - 4)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할 것
 - 5) 수정 필요 시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개념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인 경우
- 2)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3) 「건설산업기본법」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개념

3. 유해·요인을 확인하여 개선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험성 평가)

1) 사업장 내 모든 기계, 기구, 설비 현황 파악(사전조사)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의 내용 기록 및 공유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개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1)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비용, 시설·보호구 구입비 등

2)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 포함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개념

5.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작업복, 보호구 등 점검을 위한 예산 지원

2)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항목 구성

- 가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함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개념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비상 시 조치의무(매뉴얼 만들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1)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3.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개념

9.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a.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안전작업계획서, 비상대응 계획 여부 확인

b.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에 수반해야 하며, 도급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아님



4.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보호방안



4.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보호방안

관련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확보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5.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법인
보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수급인 및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이용자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재해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처벌 수준	사망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인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법인 : 50억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내
	그 외 사고	(안전보건 조치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5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조합의 존재만으로 재해률이 낮아짐
-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조합 조직률 1% 늘어나면 산업재해 발생확률 0.7% & 산업재해 은폐률 4.1% 감소
-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의견이 근로환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
- **우리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자!!!**

Thanks!

